

# 국제법 현안 Brief



국제법 현안 Brief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정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편집위원 백범석 교수 (경희대학교)

김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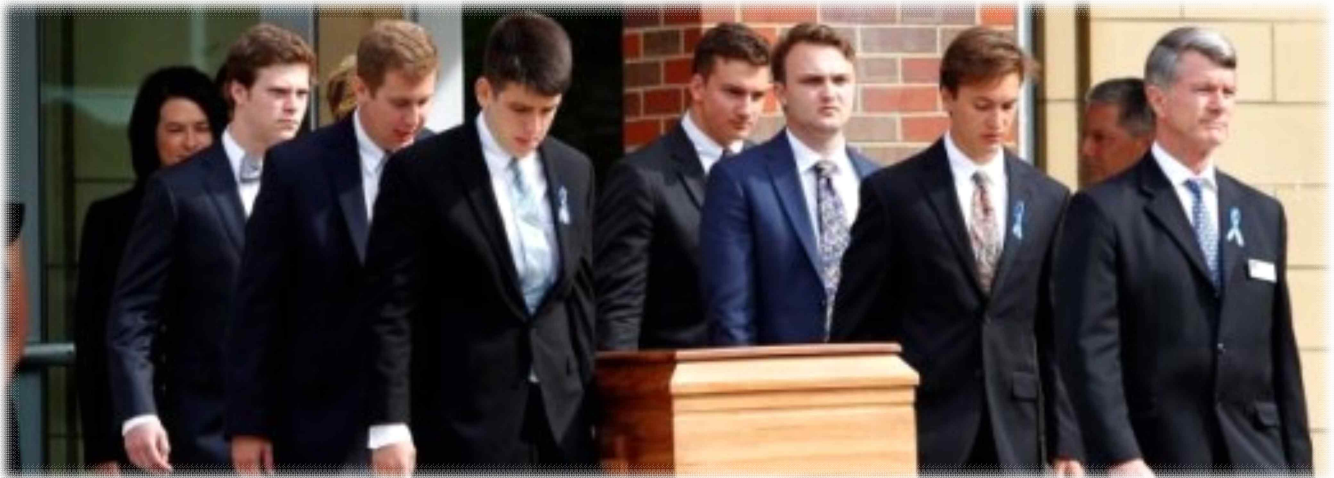
투고문의 ksilbrief@gmail.com

웹사이트 www.ksil.or.kr

국제법 현안 Brief는 국제법 관련 현안문제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법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최근 현안과 관련된 국제법 쟁점에 대한 인식과 최근 국제법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Warmbier, et al. v. DPRK 판결 : 주권면제와 테러리즘 예외

백 범 석 (경희대학교 교수)



### 1. 논의의 배경

교환학생으로 홍콩에서 한 학기를 보낼 예정이었던 미국 버지니아대 3학년생 오토 워비아(당시 22세)는 겨울방학 기간 중 북한 여행을 계획하였다. 그는 5일간의 관광을 마치고 출국 직전 평양공항에서 숙소에 걸린 정치선전물을 훔쳐 훼손한 혐의로 2016년 1월 2일 체포되었고,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오토 워비아는 억류 17개월만인 2017년 6월 14일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됐으며 엿새만인 6월 19일 사망하였다. 그의 유가족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장은 국제우편서비스인 DHL을 통해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되었다.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으나,

북한 정부는 이후 공식 법적 대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부에 결석판결을 요청하였고,<sup>1</sup> 마침내 2018년 12월 24일 법원은 북한 정부가 유족들에게 5억113만 달러 (약 56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sup>2</sup> 유가족들이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총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다.<sup>3</sup>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지만 오토 워비아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짚어 보고 국제법적 후속 문제에 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 2. 대상 판결의 요지와 내용

우선 미국 연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할권문제를 다루었는데 주로 북한의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또는 관련 국제조약에 기반하여 과연 국가면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법의 근간인 주권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한 주권면제론은 일반적으로 타국의 행위는 자국의 재판권 행사로부터 면제되며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의 행위를 공적인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를 포함한 사적인 행위로 구분하는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많은 국가가 따르지만, 외교관계나 영사관계와는 달리 외국국가에 대한 주권면제에 관해서는 발효된 다자조약이나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나 강행규범 위반 등이 주권면제의 새로운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역시 명확하지 않다. 결국, 이 문제는 주권면제와 관련한 국내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내법의 해석을 통해서, 그러한 국내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국가의 법원에 의한 국제법 이해와 해석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다. 주권면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문제(강제집행 포함)들과 연계된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및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1976년 제정된 외국주권면제법을 통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행위를 미국법원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해 왔다. 다만 외국국가에 대하여 재판권이 성립하는 주권면제의 예외사유를 제1605조부터 제160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테러리즘 예외조항으로도 불리는 1996년 추가된 제1605A조이다. 동 조항은 주권면제의 예외로 “외국국가 등에 의해 자행된 고문, 비사법적 살인, 항공기 납치, 인질납치 등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sup>4</sup> 그런데 이러한 테러리즘 예외조항은 일견 국제법에 반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sup>5</sup> 타국의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자국 내 민사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탈리아의 주장에 대해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강행규범과 주권면제 양자는 다른 주제를 다루며 그사이에 충돌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즉 주권면제는 절차적인 것으로서 일국의 국내법원이 타국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데 국한되며 제소된 행위가 적법인지 불법인지의 문제와는 무관하므로,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된 면제를 부인하는 것은 독일에 대한 이탈리아의 국제법 의무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sup>6</sup> 미국 행정부도 의회를 향해 국제조약상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었고,<sup>7</sup> 실제로 외국주권면제법상 테러리즘 예외조항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일부 국가들에 국한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측은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리즘 예외조항을 원용하였고 연방법원은 아래의 4가지 요소를 검토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인용하였다.

첫째, 북한은 외국주권면제법 상 테러지원국에 해당하며,<sup>8</sup> 비록 2016년 1월 오토 월비어가 구금되었을 당시부터 석방된 2017년 6월까지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2017년 재지정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오토 월비어 사망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사망 이후 그의 부모들은 다양한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할 당시 오토 월비어를 언급하였다. 둘째, 동 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미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가해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할 상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소송을 제기한 날 동시에 국제법에 따른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통지서(Notice of Offer to Arbitrate)를 소장과 함께 평양에 보냈으며, 이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대응이 없었음을 법원은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원고 측은 북한 정부에 의해 제1605A조에 규정된 고문, 인질납치, 비사법적 살인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먼저 북한에 의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행위들이 1991년 미국에서 제정된 고문 피해자보호법(Torture Victim Protection Act) 및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정의된 고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북한 정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사건의 목격자 및 1차적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본 사안 같은 경우 2차 물증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논의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주권 면제법 상 테러리즘 예외조항을 인용한 일련의 다른 판례에서도 가해국으로부터의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목격자 증언을 청취하기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유사한 입장을 취해 왔다. 아울러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북한 정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을 위한 증거 인정 및 채택을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인질납치의 경우, 법원은 역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오토 워비어의 구금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비사법적 살인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토 워비어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가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북한 정부는 사고원인을 식중독이라 해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은 재판 과정에서 설사 오토 워비어가 왜 혼수상태에 빠졌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수감 중에 뇌손상을 당한 것이 분명히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에 법원은 주목하였다.

### 3. 외국주권면제법상 예외조항을 근거로 한 對북한 소송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에서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1968년 북한에 납포된 미국 푸에블로호 승조원 및 희생자 가족 등 원고 4명이 11개월간 인질로 고문 및 구타를 받았으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총 6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다.<sup>9</sup>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 테러공격<sup>10</sup>에 의해 희생된 2명의 미국인 희생자 가족들은 북한이 정찰총국을 통해 일본 적군파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원들에게 테러 훈련을 지원하는 등 테러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0년 7월 미국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은 미국인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3억7천8백만 달러를 배상할 것(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은 3억달러)을 판결했다.<sup>11</sup>

2009년에는 이스라엘 북부의 사페드(safed)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30명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006년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 지역에 발사한 수천기의 로켓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특히 북한이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훈련시키고 로켓핵심 부품을 제공해 자신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전문가들의 방대한 증언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일련의 로켓 공격을 감행한데 대해 북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1억6천9백만불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sup>12</sup>

2000년 북한 정부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된 후 결국 2001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받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사건에 대해 김 목사의 동생과 아들은 2009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당시 박의춘 북한 외무상 앞으로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북한 측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 가족은 2011년 4월 법원에 결석재판을 신청했다. 2013년 3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 권한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sup>13</sup> 2015년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에게 피해자의 고문 및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1차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주권면제법 제1605A조의 입법 의도에 반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원고 측이 제기한 증거자료들이 사실에 기반한 주장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1심판결을 뒤집었다. 납북 후 김동식 목사의 죽음과 연관된 직접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북한이라는 국가체제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판결 기준을 따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sup>14</sup> 이후 환송심에서 미국 연방법원은 김동식 목사의 사망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3억3천만 달러를 배상(징벌적 성격의 배상금은 3억 달러)하라고 판결하였다.<sup>15</sup> 한편 오토 워비어 사건의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에 대한 2015년 판례를 근거로 배상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4.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주권면제 문제와 실제 배상 가능성

다수의 국가실행을 보면 재판절차에서의 국가면제와 강제집행 절차에서의 국가면제를 구분하여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가면제의 예외 인정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도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주권면제 대상에 관하여 제1609조에서 “미국에 있는 외국국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억류 및 강제집행은 제1610조 및 제1611조를 제외하고는 면제된다”고 하고, 제1610조(a)에서는 “미국에 있는 외국국가의 재산이 미국 내에서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 연방법원 또는 주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한 가압류(attachment in aid of execution) 또는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주권면제법은 1998년 국가지원 테러행위의 경우 판결의 집행방법으로서 국가재산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1998년 12월 27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런던발 뉴욕행 팬암(PanAm) 103호기 폭파사건이 있다. 미국은 당시 리비아 정부의 지원 아래 자행된 미국 팬암항공사 여객기 폭파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 및 그 이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압류를 허용하는 개정조항에 의거 1983년 이란이 연루된 이스라엘 베이루트 미군 해병대 병영 폭파 테러 희생자 유족들을 위한 손해배상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해 뉴욕 씨티은행계좌에 차명으로 예치된 이란중앙은행(Bank Markazi)의 동결 채권자산 중 17억5천만불의 차압을 승인하였다.<sup>17</sup> 즉시 이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양자 간 체결한 1955년 우호,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1955 bilateral 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에 반한다며 미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2월 13일에는 재판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 판결이 내려졌다. 만약 이란측이 주장한 대로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상기 우호 조약에 포섭된다면,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상 테러리즘 예외조항에 기반한 국가실행(강제집행 포함)이 국제관습법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1995년 우호조약을 해석함에 따라, 주권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 위반 문제를 다룰 재판관할권은 없다고 판시하였다.<sup>18</sup>

결국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의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배상금을 북한 정부로부터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내 북한 자산이 거의 없고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도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원 테러피해자 기금(US Victims of State Sponsored Terrorism Fund)을 통해 배상금 일부를 우선 받을 수는 있다. 앞서 소개한 푸에블로호 관련 사건에서 원고 4명은 해당 기금으로부터 9백만불을 일부 배상금으로 받은 바 있다.<sup>19</sup> 해당 기금은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국내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배경 하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테러지원국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에게 일부 배상금을 기금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금의 지급 요건을 보면, 테러지원국 명단에 지명된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제 테러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즉 국제 테러행위(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700건이 넘는 청구권이 제기되어 기금 자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오토 월비어 판결도 실제 배상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서 단지 상징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일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 자금을 동결해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고, 곧 있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미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정부 간의 비핵화 합의 과정이 일정 궤도에 올라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되어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북한의 자산이 미국 영토로 들어간다면 이러한 손해배상금 집행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설사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이번 판결을 기폭제로 북한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속해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중요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북한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20</sup>

**국제법 헌안 Brief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국제법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

- 1 미국 연방법원은 우선 결석판결은 일반재판과 비교할 때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하며 법적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있기에 예외적으로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5조에 의해 피고에게 불출석에 큰 책임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경우)에만 피고 측이 공식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시하며 해당 사안이 그러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 2 Warmbier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ivil Action No. 18-977 (BAH) (D.D.C. Dec. 24, 2018)
- 3 연방법원은 2019년 1월 16일 판결문(판사의견서 및 한글 번역본이 포함됨)을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수신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 하여 발송하였고 25일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되었고 이후 재발송된 판결문은 마침내 2월 14일 북한 외무성이 우편물을 받음으로써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확인’함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4 1996년 미 의회는 테러리즘 지원국 지정과 그 사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른바 반테러리즘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AEDPA)를 제정하고 이를 외국주권면제법에 추가하였다: “[a] foreign state shall not be immune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States in any case... in which money damages are sought against a foreign state for personal injury or death that was caused by an act of torture, extrajudicial killing, aircraft sabotage, hostage taking, or the provision of material support or resources for such an act...,” 28 U.S.C. § 1605A(a)(1).
- 5 Ronald J. Bettauer, “Germany Sues Italy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Foreign Sovereign Immunity - Legal Underpinnings and Implications for U.S. Law” ASIL Insights Vol.13, Issue 22, 2009.
- 6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12.
- 7 Terrorist-list States: Waiver of Requirements Relating to Blocked Property, Presidential Determination No. 99-1, 63 Fed. Reg. 59, 201 (Oct. 21, 1998)
- 8 북한은 1988년 처음으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부터 명단에서 해제되었고, 2017년 11월부터 재지정되어 현재 까지 명단에 있다.
- 9 Massie v. Gov’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592 F.Supp.2d 57 (D.D.C.2008)

- 10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 공항에서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자동소총을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해 푸에르토 리코 출신 성지순례단 17명을 포함한 민간인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 11 Calderon-Cardona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23 F. Supp. 2d 441 (D.P.R. 2010)
- 12 Kaplan v. Cent. Bank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55 F. Supp. 3d 189 (D.D.C. 2014)
- 13 Kim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ivil Action No. 2009-0648 (D.D.C. 2013)
- 14 Han Kim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774 F.3d 1044 (D.C. Cir. 2014)
- 15 Han Kim v.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87 F.Supp.3d 286 (D.D.C. 2015) 참고로 본 판결문은 2016년 평양 외무성으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외무성의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후 법원은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뉴욕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보냈지만 역시 반송되었다고 통보한 바 있다.
- 16 앞서 언급한 2012년 국가면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도 상당 부분 유사하다. 대법원은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에서 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국내법원의 추심명령과 추심소송에 대하여 설사 압류채권이 외국의 사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의 압류 등의 절차에 명시적인 동의나 국가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한 바 있다.
- 17 Bank Markazi v. Peterson, 136 S.Ct. 1310 (2016)
- 18 Certain Iranian Assets, (Islamic Republic of Iran v. U.S), Preliminary Objections, (Feb. 13, 2019)
- 19 <https://www.cooneyconway.com/blog/uss-pueblo-crew-members-family-commander-recover-9-mil>
- 20 코트라(KOTRA)가 작년에 발표한 2017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약 55억 달러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북한 위폐제조 등을 적발한 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했을 때에도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격한 반응을 보였고 북미간 갈등은 고조된 바 있다.